

외무공무원 대외직명기준 (제6조관련)

직무 및 대외직명 직렬 및 경력		외 교	영 사
참 사 관 급 이 상 직 위 경 력 자	실장급 이상 직위 및 특명전권 대사 경력자	특명전권대사 · 대사 · 특명 전권공사 · 공사 · 대리대사	총영사
	공사급 직위(심의관을 제외한 다) 및 총영사 경력자	특명전권대사 · 대사 · 특명 전권공사 · 공사 · 대리대 사 · 공사참사관	총영사 · 부총영 사
	심의관 · 공사참사관 및 부총영 사 경력자	특명전권대사 · 특명전권공 사 · 공사 · 대리대사 · 공사 참사관 · 참사관	총영사 · 부총영 사
	참사관급 직위(공사참사관 및 부총영사를 제외한다) 경력자	공사 · 대리대사 · 공사참사 관 · 참사관 · 1등서기관	총영사 · 부총영 사 · 영사
참 사 관 급 미 만 직 위 경 력 자	외교통상직렬	참사관 · 1등서기관 · 2등서 기관 · 3등서기관	영사 · 부영사
	외무영사직렬	참사관 · 1등서기관 · 2등서 기관 · 3등서기관	영사 · 부영사
	외교정보기술직렬	참사관 · 1등서기관 · 2등서 기관 · 3등서기관	영사 · 부영사

비 고

1. 재외공관에 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은 당해 공무원의 계급
상당에 상응하는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기준에 따라 외교부령이 정하
는 기준에 의한다.
2. 심의관의 범위에는 심의관급 파견자를 포함한다.